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2월 1일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박 세 범

나. 제안이유

2017년 상반기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개관예정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운영 중인 구미시 문화예술분야와 구미시 평생교육운영분야를 종합한 구미시 강동권의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남녀노소가 소통하는 어울림문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내용

-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설치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공연, 체육, 교육, 기타시설(안 제2조)
-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제한(안 제4조, 제5조)
- 사용료, 사용료 등 감면 및 반환(안 제6조, 제7조, 제8조)
- 관람료(안 제12조)
- 도서의 열람과 대출(안 제13조)
- 입장의 제한(안 제16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신 정 순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이 개관예정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및 관람료, 입장의 제한 등을 제정하여,
- 구미시 문화예술분야와 구미시 평생교육운영분야를 종합하고 강동권의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며, 운영 시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